

# 소규모 펀드 수시 공시

## 1.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

2010년 6월 13일 개정 시행된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시행령 제93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 제3항 제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 함

## 2. 대상 펀드

(기준일: 2010년 10월 25일)

운용사	펀드명	설정일	원본액 (백만원)	운용펀드
유리자산운용	유리 명품VISTA글로벌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 A	2007-04-16	4,607	유리 명품VISTA글로벌 증권투자신탁(주식)
	유리 명품VISTA글로벌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 A-e			
	유리 명품VISTA글로벌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 C			
	유리 명품VISTA글로벌 증권투자신탁(주식) Class C-e			

## 3. 발생일자: 2010년 10월 22일

## 4. 수시공시일자: 2010년 10월 25일

## 5.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내용

- 상기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임
-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음
- 처리 방안: 해당사항 없음. 단,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등의 사항이 결정된 경우 관련 사항 및 일정에 대하여 추가 공시할 예정임